

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	 
	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은행과장 김연준(02-2100-2950)	담당자	송용민 사무관 (02-2100-2953)	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(02-3145-8020)		김옥배 부국장 (02-3145-8022)		

제 목 :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,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.

□ 한국씨티은행(이하 “씨티은행”)은 10.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매 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*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10.25일 공시 하였습니다.

* 美씨티그룹의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(4.15일 발표)의 일환으로, 소매 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하되,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.

○ 이를 위해, 금융위원회(은행과)는 10.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 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.

< 조치명령(안) 주요내용 >

-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,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
- 동 계획에는 기본원칙, 상품·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, 영업채널 운영 계획,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, 내부조직·인력·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

-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(안)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·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.
-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로서 “금융위원회가 시정·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”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(금융위원회의 명령권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·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
2.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3.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
4.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*

* ①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, ② 수수료 및 보수

- 금융위원회는 10.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(안)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.

※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,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,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지각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<small>합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-	---	---